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85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의 제6장(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은 항행안전시설 설치·관리에 대해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항시설법에 근거하여 항행안전시설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한 타 규정과 내용이 상충되어 항행안전시설 관리업무에 혼선우려가 있음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 개정

2. 주요내용

가.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관련 내용 삭제(안 제255조~제267조)

나. 기타 자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우) 30103)

- 전자우편 : sanghoon16@korea.kr

- 팩스 : 044-201-5635(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전화 044-201 - 4344 / 044-201-4345, 팩스 044-201 -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